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11449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2266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11449 판결

##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 고 법무법인 B

변론종결 2023. 6. 22.

판결선고 2023. 8. 10.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 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9. 10. 10.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제3채무자들에게 위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건설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하남시 D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시행업을 맡아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7. 8.경부터 C 및 그 대표였던 E의 소송사무위임에 따라 C 및 E 개인을 당사자로 한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6. 8. 29. C와 E에게 1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7. 6. 30., 지연손해금율은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7. 3. 23. 원고, C, E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하여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7년 제232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17. 1. 19. 주식회사 G로부터 C에 대한 11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전주지방법원 H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9. 29. 'C는 원고에게 2020. 12. 31.까지 11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2021.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0. 11. 5. 확정되었다.

다.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

피고는 2017년경부터 C 및 E와 관련된 소송 업무 등을 대리 수행하여 C에 대하여 수임료 채권이 있었는데, C는 2019. 10. 10. 피고에 대한 수임료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C가 별지2 목록 기재 제3채무자들인 I, J에 대하여 갖는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제3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 라. 피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 소송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K 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은 2021. 7. 15.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피고 I은 299,766,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2021.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J은 21,780,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8.부터 2021.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위 I, J이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고등법원 L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2023. 5. 10.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현재 위 사건의 상고심이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계약체결 당시 C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외에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에 대한 신탁수익금 청구채권이 있었는데, 위 신탁수익금 청구채권에는 C가 받을 수 있는 수익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 또는 피보전권리로 하는 질권 및 채권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C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럼에도 C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고에 대한 수임료 지급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C와 피고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7년제232호 공정증서 상의 대여금 채권 및 전주지방법원 H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인 2019. 10. 10.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은 사실상 위 공정증서 상의 대여금 채권과 동일한 것인데, 화해권고결정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N의 업무상배임행위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 3)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를 상대로 양수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미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

### 1) 관련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또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 2) C의 채무초과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인 2019. 10. 10. 당시 채무자인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3, 5, 6, 7, 8,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C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M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C를 수익자로 정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시행한 관계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C가 보유한 적극재산의 대부분이었고, 그 이외의 적극재산으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K 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321,547,291원(=I에 대한 채권 299,766,469원 + J에 대한 채권 21,780,822원)정도만이 있었던 사실, ②M은 위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수익금으로 2019. 10. 2. 12,500,000,000원을, 2019. 10. 30. 900,000,000원을 각 공탁하였고, 2020. 1. 9.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된 건물 중 미분양된 상가들의 가액이 2,593,000,000원으로 감정되어서, C의 위 신탁계약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은 대략 15,993,000,000원인 사실, ④한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무렵 위 신탁계약에 따른 C의 수익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결정 등에 의해 확인되는 C의 채무만 22,077,542,820원(=압류결정으로 확인되는 채권 16,197,254,340원 + 가압류결정으로 확인되는 채권 중 본안소송에서 확인된 채권 5,880,288,480원)이고, 그 외에 위 수익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질권의 채권최고액도 11,759,000,000원에 이르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적극재산은 약 16,314,547,291원(=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321,547,291원 +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채권 15,993,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근질권으로 담보되는 채무를 제외하고도 22,077,542,82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 3)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성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가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최종적 판단은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①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금을 기준으로 321,547,291원에 불과하여 C의 적극재산의 합계 16,314,547,291원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②㉠갑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8. 22. 기준 C에 대하여 1,193,700,000원의 수임료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취득한 채권액은 피고의 수임료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한 금액만큼 C에 대한 피고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C가 스스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한 후 이를 재원으로 피고에게 변제하는 경우에 비하여 C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④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래 피고가 C를 대리하여 I과 J을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다가 그 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도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경위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C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위 회사가 I과 J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함께 고려하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무법인인 피고의 법률적 조력을 통하여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자신의 수임료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③㉑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의 C의 적극재산은 미실현상태의 이익을 평가하여 산입하여야 하였고, 소극재산은 다수의 압류와 가압류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실제로 그와 같은 채무가 존재하는지는 추후에 본안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고가 C의 채무초과여부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④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도 C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 사건의 소송위임을 받는 등 2020. 5. 29.까지 계속하여 위 회사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사실, ㉒갑제24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2019. 9. 6. M에게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회사와 통모하여 위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를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진, 판사 정선희, 판사 박채은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 별지1

## 목 목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2019. 10. 10. 주식회사 C의 아래 채권들에 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

1. 주식회사 C가 2016. 3.경부터 2017. 3.경까지 I에게 소비대차계약에 기해 변제한 금액 중 이자제한법 상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주식회사 C가 I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주식회사 C가 2016. 8. 30.경 J으로부터 차용한 6억 원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 중 이자제한법 상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주식회사 C가 J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끝.

별지2

목    록

1. I

2. J. 끝.

